

# 간호대학원 내규

제정	2008.09.01
개정	2009.11.10
개정	2010.05.19
개정	2011.06.14
개정	2013.03.27
개정	2017.08.04
개정	2018.10.18
개정	2020.09.14
개정	2023.01.01
개정	2024.12.01
개정	2025.12.01
개정	2026.01.01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42조에 의거하여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학과 및 전공의 설치) 간호대학원에 다음의 학과와 전공을 설치한다.

1. 임상간호학과 : 감염관리전문간호전공, 임상전문간호전공, 노인전문간호전공
2. 간호교육학과 : 간호학전공
3. 임상시험운영관리학협동과정 : 임상시험운영관리전공

## 제 2 장 입학 및 전공

제 3 조(입학전형) ① 입학전형은 연 2회 이내에서 실시한다.

② 이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1. 입학원서
2.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
3.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
4. 수학계획서
5. 재직 및 경력증명서
6. 간호사 면허증 사본 (임상시험운영관리학협동과정 제외)

제 4 조(전형방법) 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실시한다.

② 입학전형은 아래의 학과별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다.

1. 임상간호학과 및 간호교육학과

서류전형			면접전형		계
학부전공 관련성	학부성적	실무경력	학문적 적성·인성	수학계획 및 진로방향	
10	20	20	25	25	100

2. 임상시험운영관리학협동과정

서류전형		면접전형		계
학부성적	실무경력	학문적 적성·인성	수학계획 및 진로방향	
20	20	30	30	100

제 5 조(입학전형위원회)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.

② 입학전형위원회는 본 대학원 학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.

### 제 3 장 교과과정 및 학사관리

제 6 조(교과과정) 교과과정은 공통필수, 공통선택, 전공필수, 전공선택, 논문(청구자에 한함)으로 한다.

제 7 조(교과목 담당교수) 교과목의 강의 및 실기를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교내외의 부교수이상의 교원
2. 교내외의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
3.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4. 각종 학술연구기관 및 전문기관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
5. 기타 간호대학원장이 자격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 8 조(개설과목 최소인원) 개설과목의 최소 등록인원은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9 조(예비수강신청) 다음 학기 학생들의 등록여부,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, 신상변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학기 종료직전 소정의 양식으로 예비수강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 10 조(수업평가) 학기 종료 직전 개설된 과목에 대하여 재학생들에 의한 수업평가를 실시한다.

### 제 4 장 장학금

제 11 조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) ① 이 대학원의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면학장학금

가. 임상간호학과 및 간호교육학과

1) 자격: 직전학기 성적우수자로, 학과별 세부 기준에 따른다.

- ① 임상간호학과: 직전학기 평점평균 4.0 이상
- ② 간호교육학과: 직전학기 평점평균 4.3 이상

- 2) 지급인원: 직전학기 정규 등록생의 10%의 인원
  - 3) 지급액: 각 학기의 수업료 30% 감면
  - 4)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
    - ① 직전학기 수강 교과목의 총점이 높은 자
    - ② 직장이 없는 자
    - ③ 기타 간호대학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준하는 자
  - 나. 임상시험운영관리학협동과정
    - 1) 자격: 전일제(비직장인/비사업자) 대학원생
      - ① 신입생: 직전 학위과정 총 평점평균 3.5 이상인 자
      - ② 재학생: 직전학기 평점평균 4.0 이상인 자
    - 2) 지급액: 각 학기의 수업료 50% 감면
  - 2.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장학금
    - 가. 자격: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
    - 나. 지급액: 각 학기 수업료의 30% 감면
  - 3. 산학연협력장학금
    - 가. 자격: 본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및 회사에 소속된 자
    - 나. 지급액: 각 학기 수업료의 30% 감면
    -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족회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.
  - 4. 재단산하 교직원 장학금
    - 가. 자격: 일송학원 산하 의료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자
    - 나. 지급액: 각 학기 수업료의 50% 감면
  - 5. 한림대학교 교직원 장학금
    - 가. 자격: 한림대학교 교직원
    - 나. 지급액: 세부 감면율은 「별표1」에 따름
  - 6. 조교장학금
    - 가. 자격: 연구조교로 임용된 자
    - 나. 지급액: 별도의 조교임용규정에 따름
  - 7. 외부장학금은 교외에서 유치한 장학금으로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서 지급한다.
- 제 12 조(장학금 지급 유효기간) 장학금 지급 유효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한다.

## 제 5 장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

- 제 13 조(외국어시험)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.
- ②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시행한다.
  - ③ 단, 임상시험운영관리학협동과정은 외국어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.
- 제 14 조(종합시험)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 교과목은 간호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호대학원장(이하 “대학원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
- ② 종합시험은 매년 5월과 9월에 시행한다.

- 제 15 조(응시자격) ① 외국어시험은 1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.  
 ② 종합시험은 전공교과목을 12학점이상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다.  
 ③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은 순서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.  
 ④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직전학기까지 평균평점이 3.0 이상이어야 한다.
- 제 16 조(응시절차 및 방법)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제 17 조(출제 및 평가) ① 시험출제 위원은 해당학과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  
 ② 배점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.  
 ③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나, 과점수로 후 재 응시할 수 있으며 해당시험 응시절차에 따른다.
- 제 18 조(학위과정 수료자의 등록금 환불)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논문지도 등의 이유로 수료 후 등록을 하고, 외국어시험이나 종합시험을 응시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한다.

## 제 6 장 학위청구논문

- 제 19 조(논문지도과정 절차) 논문지도과정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.
1. 논문지도신청서 제출
  2. 논문지도교수 배정
  3. 논문지도 ; 개별지도 또는 통합지도
  4. 학위논문작성계획서의 제출
  5. 학위논문작성계획서의 공개발표 및 심사
- 제 20 조(논문지도 신청자격) 전공교과목 12학점이상을 이수 후 논문지도를 받을 수 있다.
- 제 21 조(논문지도 신청) ① 논문지도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은 논문구상을 하여 학위논문지도신청서 I<서식 3>를 제출하여야 한다.  
 ② 석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논문지도를 받고자 할 경우 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초 논문지도등록을 하고 학위논문지도신청서II<서식 4>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22 조(논문심사 절차) 학위청구논문심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.
1.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
  2. 논문심사위원회 구성
  3. 예비심사
  4. 본심사 및 구술시험
- 제 23 조(논문심사 신청자격)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으려면 아래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
1. 해당학기에 전공수료학점 이수예정
  2. 직전학기까지의 평균평점 3.0이상
  3. 외국어시험 합격 (임상시험운영관리학협동과정 제외)
  4. 종합시험 합격
- 제 24 조(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) ① 학생은 해당학기 2개월 이내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

청구논문 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학위청구논문 심사 희망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서<서식 5> 1부
2.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 추천서<서식 6> 1부
3. 석사학위청구논문 4부.

제 25 조(논문심사위원회) ① 간호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
② 위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의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담당한다.

③ 간호대학원장은 논문심사위원 중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심사에 있어서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.

제 26 조(논문의 심사)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본 심사는 구술시험을 병행한다.

제 27 조(예비심사) ① 예비심사는 서면심사로 하고 비공개로 실시한다.

② 예비심사는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, 논문의 주제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연구 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·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다.

③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 예비심사요지<서식 7>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④ 예비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한다.

⑤ 심사위원장은 석사학위논문예비심사 결과통보서<서식 8>에 심사위원들의 예비심사요지를 첨부하여 논문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, 간호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논문지도교수는 논문 제출자에게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논문의 수정·보완 사항을 지시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본 심사에 제출하도록 지도한다.

제 28 조(본 심사 및 구술시험) ① 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수정·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논문의 내용과 체계상으로 결함이 있는가를 심사한다.

② 구술시험은 본 심사와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논문에 관련된 구술시험을 행한다.

③ 심사위원들은 석사학위논문 심사요지<서식 9>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④ 논문심사의 판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하고,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제 29 조(심사결과 보고) ① 심사위원장은 해당 학기의 지정된 기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, 석사학위논문 심사결과종합통보서<서식 10>에 심사위원들의 심사요지를 첨부하여 간호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간호대학원장은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결과를 간호대학원 학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합격자에 대한 학위수여여부를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결정한다.

③ 간호대학원장은 제2항의 의결과 논문의 심사요지 및 구술시험 결과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0 조(학위논문 제출) 본 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정된 기일내에,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된 논문 3부(양장본)를 간호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 7 장 졸업시험

제 31 조(응시자격) ① 졸업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.

1. 4학기이상 정규등록
2. 최종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2학점 이상 취득
3. 외국어시험 합격 (임상시험운영관리학협동과정 제외)

② 직전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.0 이상이어야 한다.

제 32 조(응시절차)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 원서를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3 조(시행일자) 졸업시험은 매년 5월과 12월에 시행한다.

제 34 조(실시방법) ① 졸업시험의 과목은 간호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- ②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.
- ③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나 과정수료 후 재 응시할 수 있으며, 졸업시험 응시절차에 따른다.
- ④ 시험출제 위원은 해당 학과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[별표1] 한림대학교 교직원 장학금 감면율

기관	대상	감면율(%)	비고
대학교	정규직원	70	일 8시간 이상 또는 월 209시간 이상 근무자 대상
	기금직원		
	특수목적사업직원		
	임시직원		
	상기 외 교직원	50	
산단	직원	70	일 8시간 이상 또는 월 209시간 이상 근무자 대상
	기간제직원		
	전담사업직원		
	상기 외 교직원	50	

### 부 칙

- ①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.
- ② 이 내규는 2009년 12월 1일부로 시행한다.
- ③ 이 내규는 2010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.
- ④ 이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내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시행일 이전 간호교육학과에 입학하여 수료, 졸업, 재학중인 학

생도 건강교육및간호관리전공 학생으로 본다.

부 칙

① 이 내규는 2017년 8월 4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내규는 2018년 11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② (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시행일 이전 간호교육학과에 입학하여 수료, 재학중인 학생도 간호학전공 학생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변경 내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변경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변경 내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변경 내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